



K-ISAP-03

승인	
회장	

한국계리업무기준
(제 3 편)

« K-IFRS 제 1019 호 종업원급여 »

신 구 대비표

한국보험계리사회 운영위원회

2015 년 0X 월 XX 일



총칙

2014.07.22 시행 기준	현재 기준
<p>1.1. 목적 - 이 기준의 목적은 K-IFRS 제 1019 호와 관련된 계리서비스를 수행하는 계리사에게 업무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기준은 실제 또는 추정 K-IFRS 보고서를 준비하는 보고기업을 위해 계리사가 수행하는 계리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최종 이용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확신을 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FRS 제 1019 호를 준수하고 해당 사업장의 회계정책을 반영하여 계리서비스가 전문적이고 철저하게 수행된다. • 결과가 최종 이용자의 필요에 부합되며, 명확하고 평이하게 설명되고, 또한 완전하다. • 사용된 가정과 (모델, 모델링기법을 포함한) 방법론이 적절하게 명시되어 있다. 	<p>1.1. 목적 - 이 기준은 K-IFRS 제 1019 호와 관련된 계리서비스를 수행하는 계리사에게 지침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최종 사용자의 신뢰를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리서비스가 전문적이고 주의 깊게, K-IFRS 제 1019 호와 일관되면서 보고기업의 회계정책을 고려하여 수행된다. • 결과가 최종 사용자의 필요에 부합하고, 명확하고 이해 가능하게 제시되며 충실하다. • 사용된 가정과 방법론(모델, 모델링기법을 포함)이 계리사의 계리보고서에 적절하게 공시되어 있다. 적절하게 공시되어 있다.

2014.07.22 시행 기준	현재 기준
<p>1.2. 범위 - 이 기준은 계리사가 수행하는 K-IFRS 제 1019 호와 관련된 모든 계리 서비스에 적용된다. K-IFRS 제 1019 호의 적용을 받는 모든 유형의 종업원급여 제도에 관한 실제 또는 추정 K-IFRS 보고서를 준비하는 사업장을 위해 계리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계리사는</p>	<p>1.2. 범위 - 이 기준은 K-IFRS 제 1019 호의 적용을 받는 모든 유형의 종업원급여 제도에 관한 실제 또는 추정 K-IFRS 재무제표를 준비하는 보고기업을 위해 계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리사에게 지침을 제공한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K-IFRS 제 1019 호와 관련된</p>

<p>해당 사업장의 임직원, 외부자문역, 감사인, 또는 감독당국 등의 다양한 자격으로 이러한 계리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p>	<p>계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계리사 (예를 들어 회계 감사 자문, 인수 관련 매수 자문)는 이 기준의 지침을 업무에 관련되는 정도까지 고려해야 한다.</p>
--	--

2014.07.22 시행 기준	현재 기준
<p>1.3. 준수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리사가 이 기준의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u>한국계리업무기준</u>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p> <p>1.3.1. 이 기준에 상충되는 법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이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p> <p>1.3.2. 계리작업에 적용되는 계리사 행동강령이 이 기준과 상충되고 그 행동강령을 준수하기 위해 이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p> <p>1.3.3. 계리사가 미 준수 사항의 속성, 이유, 영향을 계리보고서에 적절하게 명시하는 경우</p> <p><i>K-ISAP-01(계리업무 일반기준)</i>의 문단 (2.6), (2.8) 및 (2.9)에서는 계리사가 특정한 가정과 방법론의 사용을 지시 받았을 때의 상황을 다루고 있으며, 그 문단들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계리사는 이 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p>	<p>1.3. 준수 - [이 기준에서 이 문단은 <i>K-ISAP-01(계리업무 일반기준)</i> 문단 1.3 을 대치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리사가 이 기준의 지침을 따르지 못할 수 있으나, 여전히 이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p> <p>1.3.1. 법규 사항 준수가 이 기준과 상충되는 경우</p> <p>1.3.2. 계리 작업에 적용되는 계리사 행동강령 준수가 이 기준과 상충되는 경우</p> <p>1.3.3. 계리사가 미 준수 사항의 성격, 이유, 영향을 계리보고서에 적절하게 공시하는 경우</p>

2014.07.22 시행 기준	현재 기준
<p>1.4. <i>K-ISAP-01(계리업무 일반기준)</i> 과의 관계 - 이 기준을 준수하고자 하는 계리사는 이 기준의 내용이 <i>K-ISAP-01(계리업무 일반기준)</i>의 조항을</p>	<p>1.4. <i>K-ISAP-01(계리업무 일반기준)</i> 과의 관계 - 가능한 경우 이 기준은 <i>K-ISAP-01(계리업무 일반기준)</i> 의 지침을 반복하지 않는다. 이 기준(모델</p>

<p>우선하는 경우가 아닌 한 <i>K-ISAP-01(계리업무 일반기준)</i>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i>K-ISAP-01(계리업무 일반기준)</i>에서 “ 이 기준 ” 이라고 지칭하는 조항들은 <i>K-ISAP-03(종업원급여)</i>에서 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p>	<p>기준으로서)의 준수를 선언하는 계리사는 <i>K-ISAP-01(계리업무 일반기준)</i> 또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i>K-ISAP-01(계리업무 일반기준)</i>에서 “ 이 기준 ” 이라고 참조된 조항은 적절한 경우 <i>K-ISAP-03(종업원급여)</i>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p>
---	---

2014.07.22 시행 기준	현재 기준
<p>1.5. 용어해설 – 이 기준에서는 여러 가지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정확한 의미는 “ (부록 1) 용어 해설 ” 에서 정의되어 있다.</p>	<p>1.5. 용어 정의 – 이 기준은 정확한 의미가 “ 용어 해설 ” 에서 정의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한다. 이 기준은 K-IFRS 제 1019 호에서 정의된 용어도 동일한 의미를 지닌 경우 사용한다.</p>

2014.07.22 시행 기준	현재 기준
<p>1.6. 상호참조 – 이 기준을 2011년 6월에 수정된 “K-IFRS 제 1019 호 종업원급여”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으며, 그 후에 “K-IFRS 제 1019 호 종업원급여”의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계리사는 이 기준의 지침이 어느 정도까지 적절하고 계속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p>	<p>1.6. 상호참조 – 이 기준은 2014년 9월까지 발표된 “K-IFRS 제 1019 호 종업원급여”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해석 포함)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2014년 9월 이후에 “K-IFRS 제 1019 호 종업원급여”이 수정되는 경우, 계리사는 이 기준의 지침이 어느 정도까지 부합하고 적절한지 고려해야 한다.</p>

2014.07.22 시행 기준	현재 기준
<p>1.7. 효력발생일 – 이 기준의 효력 발생일은 2014년 XX월 XX일 이다.</p>	<p>1.7. 효력발생일 – 이 기준은 2015년 XX월 XX일 이후에 수행된 계리서비스에 대해 효력이 있다.</p>

제1장. 업무수행기준

2014.07.22 시행 기준	현재 기준
<p>2.1. 회계기준의 이해 – 계리사는 계리서비스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K-IFRS 제 1019 호 및 다른 K-IFRS 기준들의 관련 문단,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관련 회계정책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표고객의 조언을 구하여야 한다.</p> <p>a. 해당 계리서비스에 관련이 있는 다른 K-IFRS 기준이 있는지 확신이 없는 경우</p> <p>b. 계리서비스의 특정 부분이 K-IFRS 제 1019 호, 다른 K-IFRS 기준의 관련 문단 또는 관련된 회계정책에 대하여 대체 가능한 해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p>	<p>2.1. 회계기준의 이해 – 계리사는 K-IFRS 제 1019 호, 해당 기준을 해석한 K-IFRS, 해당 기준이 명시적으로 참조하는 다른 K-IFRS 의 관련 문단, 그리고 보고기업의 관련 회계정책이 있다면 그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표고객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p> <p>a. 해당 계리서비스에 관련이 있는 다른 K-IFRS 가 있는지 확신이 없는 경우</p> <p>b. 계리서비스의 특정 부분이 K-IFRS 제 1019 호, 해당 기준을 해석한 K-IFRS, 해당 기준이 명시적으로 참조하는 다른 K-IFRS 의 관련 문단 또는 관련 회계정책에 대한 대체 해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p>

2014.07.22 시행 기준	현재 기준
<p>2.1. 중요성 – 계리사는 계리서비스와 관련된 중요성과 K-IFRS 보고서에 관련된 중요성을 구분하여야 한다.</p> <p>2.1.1. 계리사는 계리서비스와 관련된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K-ISAP-01(계리업무일반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p> <p>2.1.2. K-IFRS 보고서에 관련된 중요성에 대한 판단의 책임은 해당 사업장에게 있다. 계리사는 K-IFRS 보고서에 관련된 중요성 판단에 관한</p>	<p>2.2. 중요성 – 계리사는 계리서비스, K-IFRS 재무제표 준비와 관련된 중요성과 해당 재무제표의 감사에 관련된 중요성을 이해하고 구분해야 한다.</p> <p>2.2.1. 계리업무수행시 적절한 경우 계리사는 대표고객 또는 보고기업으로부터 K-IFRS 재무제표 준비와 관련된 중요성에 대한 지침을</p>

<p>기준을 대표고객 또는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구하여야 하며, 계리사가 채무측정의 여부, 정제되거나 근사적인 계리적 가정과 방법론의 사용, 결과값 설명의 상세 정도 등에 관하여 대표고객에게 조언을 할 때에는 그 중요성 판단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p> <p>2.1.3. 이 기준에서는 앞으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중요성”이라 함은 K-IFRS 보고서와 관련된 중요성을 의미한다.</p>	<p>요청해야하며 계리서비스를 수행할 때 해당 지침을 고려해야한다.</p> <p>2.2.2. K-ISAP-01(계리업무 일반기준) 문단 2.4 중요성을 적용할 때, 계리사의 계리서비스 관련 중요성 한도는 알려져 있을 경우 보고기업의 K-IFRS 재무제표 준비와 관련된 중요성 한도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계리서비스와 관련한 중요성을 평가할 때는 K-IFRS 재무제표 사용자가 아닌 대표고객 또는 보고기업이 계리서비스의 최종사용자이다.</p> <p>2.2.3. 이 기준의 이후 문단에서 언급되는 모든 “중요성”은 계리서비스와 관련된 것이다.</p>
---	--

2014.07.22 시행 기준	현재 기준
<p>2.2. 중대한 오류, 누락 및 준수 의무의 위반 계리사가 계리서비스의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정보(종업원과 부양가족 또는 수익자에 관한 정보, 종업원급여제도와 운영, 적립자산, 해당 사업장의 회계정책, 해당 사업장의</p>	<p>삭제</p>

<p>종업원급여제도에 대한 분류 등)에 중대한 오류 또는 누락 사항이 있거나, K-IFRS 제 1019 호 또는 다른 회계기준 또는 해당 사업장의 회계정책에 대한 중대한 위반 사항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대표고객에게 알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 문제들이 계리보고서를 발간하기 이전에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계리사는 그 사항들을 계리보고서에서 밝혀야 한다. 이 기준에 의해 오류, 누락 또는 준수义务的 위반 사항을 찾아내고 분석하는 등의, 계리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나는 의무가 계리사에게 추가적으로 부여되지는 않는다.</p>	
--	--

2014.07.22 시행 기준	현재 기준
<p>2.3. 의제 의무 – 계리사는 의제 의무를 발생시키는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관행의 존재 여부와 성격에 대하여 대표고객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 있다. 계리사는 그 내용을 계리보고서에서 밝혀야 한다. 계리사가 계리서비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의존하는 정보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표고객에게 해명을 요청해야 한다. 계리보고서를 발간하기 전까지 그 불확실성이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 계리사는 는 문단 (2.3)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 기준으로 인해 공식적인 제도 또는 합의를 벗어나는 의제 의무를 찾아내거나 분석하는 등의, 계리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나는 의무가 계리사에게 추가적으로 부여되지는 않는다.</p>	<p>2.4. 의제 의무 – 계리사는 보고기업의 종업원 급여 관행과 정책에서 비롯된 의제 의무의 존재 여부와 성격에 대하여 대표고객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 있다. 그런 경우 계리사는 K-ISAP-01(계리업무 일반기준) 문단 2.3 타인 의존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계리사가 계리서비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 분명해진다면 대표고객에게 해명을 요청해야 한다. 불확실성이 계리사에게 만족스러운 정도로 해소되지 않는다면, 계리사는 K-ISAP-01(계리업무 일반기준) 문단 2.5.4 자료의 결함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 지침은 공식적인 제도 또는 합의를 벗어나는 의제 의무를 찾아내거나 분석하는 등의, 계리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적인 의무를 계리사에게 부과하지 않는다.</p>

2014.07.22 시행 기준	현재 기준
<p>2.4. 종업원 급여제도의 분류 – 해당 사업장은 K-IFRS 제 1019 호에 따른 종업원 급여제도를 단기급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해고급여 및 기타 장기 종업원급여로 분류한다.</p> <p>2.4.1. 계리사는 퇴직급여제도의 분류에 관하여 대표고객에게 조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때 종업원급여제도가 다수의 분류에 해당되는 특성을 가진 경우(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의 요소를 결합한 퇴직급여제도, 또는 의료보장과 급여대체를 모두 포함하는 종업원 상해보장제도 등)에는 계리사로서의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 조언해야 한다.</p> <p>2.4.2. 계리사는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급여 분류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 계리서비스를 수행하는 동안에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 분류체계가 K-IFRS 제 1019 호에 중대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리사는 문단 (2.3)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p> <p>2.4.3. 계리사가 해당 사업장의 K-IFRS 제 1019 호에 따른 종업원급여 분류체계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고객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p>	<p>2.5. 종업원 급여제도의 분류 – 보고기업은 자신의 종업원 급여제도를 K-IFRS 제 1019 호에 따라 단기급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해고급여 및 기타장기급여로 분류할 책임이 있다.</p> <p>2.5.1. 계리사는 종업원급여제도의 분류에 관하여 대표고객에게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조언을 제공할 때, 종업원급여제도가 복수의 분류에 해당하는 특성을 가진 경우(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의 요소를 결합한 퇴직급여제도, 또는 의료보장과 급여보장을 모두 포함하는 업무관련상해급여 등) 계리사는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조언해야 한다.</p> <p>2.5.2. 계리사에게 보고기업의 종업원급여제도 분류가 불확실한 경우 대표고객으로부터의 지침을 구해야 한다.</p> <p>2.5.3. 계리사는 보고기업의 종업원급여제도 분류를 K-ISAP-01(계리업무 일반기준) 문단2.8 지정된 가정과 방법론의 지정된 방법론으로 간주해야 한다.</p>

2014.07.22 시행 기준	현재 기준
<p>2.5. 계리적 가정 – 해당 사업장은 종업원급여의 총 비용을 결정하는 변수들에 대한 최선 추정치를 나타내는 제 가정을 자기 책임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계리사는 계리서비스의 수행에 사용되는 제 가정의 일부 또는 전부의 선택에 관하여 대표고객에게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그 경우, 계리사는 K-ISAP-01(계리업무 일반기준)의 문단 (2.6)에서 (2.9)까지의 지침을 따라야 하며, 또한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해고급여 또는 기타 장기급여의 평가에 사용되는 제 가정들에 대한 K-IFRS 제 1019 호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K-IFRS 제 1019 호에서는 그 가정들이 편익이 없고 상호양립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재무적 가정들은 종업원급여가 발생하는 평가기간에 대하여 평가일 현재의 시장 기대치에 근거하여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p>	<p>2.6. 계리적(보험수리적) 가정 – 보고기업은 종업원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편익이 없고 서로 양립가능한 가정을 선택할 책임이 있다. 계리사는 계리서비스에 사용되는 가정들의 일부 또는 전부의 선택 및 합리성에 관하여 대표고객에게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조언을 할 때, K-ISAP-01(계리업무 일반기준)의 문단 2.6에서 2.9까지의 지침을 따라야 하며, 또한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해고급여 또는 기타 장기급여의 측정에 사용되는 제 가정들에 대한 K-IFRS 제 1019 호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지정된 가정을 사용할 때 계리사는 K-ISAP-01(계리업무 일반기준) 문단 2.8 지정된 가정과 방법론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p>

2014.07.22 시행 기준	현재 기준
<p>2.5.1. 제 가정의 선택 – 계리사가 대표고객에게 제 가정의 선택에 관한 조언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계리서비스의 수행에 필요한 제 가정들의 유형을 확인한다. b. 각 가정의 유형에 해당되는 정보를 검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재무적 가정과 관련하여 평가일 현재의 시장 기대치 관련 정보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 정보에는 	<p>2.6.1. 가정 선택시 일반적 접근법 – 계리사가 대표고객에게 계리적 가정의 선택과 합리성에 관해 조언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계리서비스의 수행에 필요한 가정들의 유형을 식별한다. b. 각 가정의 유형에 해당되는 정보를 검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재무적 가정과 관련하여 측정일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는

<p>회사채 및 국채의 수익율곡선, 명목 또는 물가연동채권의 수익율, 물가지수의 최근 변동, 예상 물가상승율, 고용 통계 및 전망, 경제 통계 및 전문가 분석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다.</p> <p>ii) 인구통계학적 가정과 관련하여서는 계리사의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급여제도의 대상자 집단에 관계되는 정보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 정보에는 대상자 집단에 대한 신뢰할만한 수준의 경험자료, 공표된 테이블 또는 경험 연구와 같은 전문가의 분석자료, 특정한 인구통계학적 가정에 관련된 일반적 추세에 관한 연구 또는 보고서, 해당 사업장의 미래 기대치, 지역 또는 산업의 경제 상황, 대체고용 여건, 해당 사업장의 인사정책이나 관행과 같이 미래의 경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진 관련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p> <p>iii) 제 가정에서 (성별, 연령,</p>	<p>기대치 및 기타 정보를 검토해야 한다. 그런 정보의 예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채 및 국채의 수익율, - 명목 또는 물가연동채권의 수익율, - 관련물가지수의 최근 변동(일반물가 또는 의료원가상승률)과 상승률 예측, - 고용 통계 및 전망, - 관련 경제 통계 및 전문가 분석자료가 포함된다. <p>계리사는 보고기업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래의 실제 결과에 대한 가정과 관련하여서는 보고기업의 예상 또한 고려할 수 있다.</p> <p>ii) 인구통계학적 가정과 관련하여, 계리사의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 보고기업의 종업원급여 대상자 집단에 관련된 정보를 검토해야 한다. 대상자 집단의 경험 검토와 관련하여 이 기준은 계리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적인 의무를 계리사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계리사에 의해 검토될 수도 있는 정보의 예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집단에 대한 신뢰할만한 경험 자료, - 공표된 표 또는 경험 연구 같은 전문가의 분석, - 특정한 인구통계학적 가정에 관련된 일반적 추세에 관한 연구 또는 보고서, - 지역 또는 산업의 경제 상황, 대체고용 여건, 보고기업의 인사정책이나 관행과 같이 미래의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진 관련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p>계리사는 보고기업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래의 실제 결과에 대한 가정과 관련하여서는 보고기업의 예상 또한 고려할 수 있다.</p>
--	--

<p>출생년도, 근속연수, 고용형태 또는 입사 년도 등과 같은) 특정한 변수가 그 가정과 관련되어 제도의 미래 경험치에 영향을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지를 감안해서 어느 변수들을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하고, 가정의 형태가 달라지면 대상자집단의 구분도 적합하게 다르게 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p> <p>iv) K-IFRS 제 1019 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즉, 편이가 없고, 상호양립적이며, 계리사의 판단으로 볼 때 해당 사업장의 최선의 추정치를 나타내기에 적합한) 제 가정을 제시하여야 한다.</p>	<p>c. 각 가정의 유형에 적절한 형식을 선택할 때, 중요성(문단 2.2)과 비례의 원칙(문단 2.3)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사망률은 흔히 성별, 연령에 따라 다르며, 계리서비스에 대한 중요성과 비례는 연도, 고용형태, 위치나 그 밖의 요소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p> <p>d. 계리사의 의견에 따라 권고된 가정은 편이가 없고, 서로 양립가능하며, 보고기업에 의해 채택된 경우 보고기업의 최선의 추정을 반영해야 한다.</p>
--	---

2014.07.22 시행 기준	현재 기준
<p>2.6.2. 사망률 가정 – 대표고객에게 사망률 가정의 선택에 관한 조언을 제공할 때, 계리사는 미래 사망률의 예상 변화를 감안해서 재직기간 및 퇴직후의 사망률을 반영한 사망률 가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계리사는 이를 위해 세대사망률표(즉, 출생연도별 사망률표를 가진 행렬식 사망률표)를 사용할 수 있다. 계리사는 또한 적정 기간에 대한 사망률을 추정하는 등의 단순화된 사망률 추정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p>	<p>2.6.2. 사망률 가정 – 대표고객에게 사망률 가정의 선택 또는 합리성에 관한 조언을 제공할 때, 계리사는 제도 가입자의 미래 사망률의 예상되는 변화를 계리서비스의 중요성과 비례에 따라 반영해야 한다. 미래 사망률을 반영하는 기법의 예로는 연도별, 출생연도별, 기간별 사망률 추정을 별개의 사망률표로 포함한 행렬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p>

2014.07.22 시행 기준	현재 기준
<p>2.6.3. 할인율 가정 – 대표고객에게 할인율가정의 선택에 관한 조언을 제공할</p>	<p>2.6.3. 할인율 가정 – 대표고객에게 할인율가정의 선택 또는 합리성에 관한</p>

<p>때, 계리사는 K-IFRS 제 1019 호의 요건을 반영한 할인율 가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즉, 할인율에는 종업원급여채무의 통화 및 추정기간과 일관성이 있는 우량회사채 또는 국채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장 수익율이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p>	<p>조언을 제공할 때, 계리사는 K-IFRS 제 1019 호의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즉, 할인율은 측정일 현재 거래총이 두터운 시장이 있는 우량 회사채 또는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며, 그러한 채권은 종업원급여채무의 통화 및 예상지급시기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계리사는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할인율 가정을 식별하기 위해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다.</p>
--	---

2014.07.22 시행 기준	현재 기준
<p>a. 일반적인 방식 간편법이 (아래 e.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서지 않으면, 계리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측정일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의 측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추정한다. ii) (아래 b.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적절한 스폿이자율곡선을 정한다. iii) 그 스폿이자율을 적용하여 측정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구한다. iv) K-IFRS 보고서에 공시하거나 또는 다른 목적(예를 들어, 순이자 또는 근무원가의 계산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매우 유사해지는 단일 가중평균 할인율을 정한다. <p>b. 적절한 수익율곡선 - 계리사는 측정일 현재의 채권수익율 자료를 활용하여 적절한 수익율곡선을 만들 수 있다. 또는 K-IFRS 제 1019 호에 따른 할인율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또는 적절하게</p>	<p>a. 수익률 곡선 - 계리사는 예측 급여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데 현물이자율 수익률 곡선을 권고할 수 있다. 계리사는 측정일 현재의 채권 수익률 자료로부터 적절한 수익률 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p>

수정된) 제 3자가 제공하는 수익율곡선을 적용할 수도 있다.

i) 회사채 특성 – 계리사가 회사채를 포함한 채권시장정보를 활용하여 수익율곡선을 만들거나 제 3자의 수익율곡선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또는 적합하도록 수정하는) 때에는, 그 채권들에 대하여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통화 : 회사채는 종업원급여제도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되어야 한다.
- 등급 : 회사채는 우량채권이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채권등급자료를 활용할 때에, 계리사는 그 기관들간의 평가등급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그러한 차이를 다루기 위한 규칙을 갖추고 있거나 수익율곡선 개발자의 규칙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계리사는 또한 신용평가프로세스에서의 시간차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이러한 시간차가 중요하지 않겠지만,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 시간차를 반영하여 수익율곡선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
- 유형 : 일부 회사채의 경우에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이 사전에 모두 정해져 있지 않다 (예, 전환사채 또는 중도상환채). 그러한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익율곡선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수익율곡선을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 시장 심도 : 채권시장의 심도가

또는 계리사가 K-IFRS 제 1019 호 할인을 선택의 목적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또는 적절하도록 조정된) 제 3자의 수익률 곡선을 적용할 수 있다. 제 3자의 수익률 곡선을 적용할 경우 계리사는 **K-ISAP-01(계리업무 일반기준) 문단2.3 타인 의존**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i) 채권 유니버스 – 수익률 곡선을 수립하거나 제 3자의 수익률 곡선의 적절성을 평가할 경우, 계리사는 수익률 곡선 생성에 사용된 채권 유니버스의 특성(통화와 회사채의 경우 등급 포함)을 고려해야 한다. 계리사는 이상치(유니버스에 포함된 비슷한 등급과 듀레이션인 대부분의 채권의 수익률과 실질적으로 다른 수익률을 가진 채권)나 특별한 특성이 있는 채권(콜과 같은)을 처리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p>전반적으로 깊을 때에는 우량회사채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모든 듀레이션에 대해서 시장 심도가 높을 필요는 없다. 국제결제은행은 시장참여자들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규모의 물량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때에 시장의 심도와 유동성이 높다고 간주한다. 시장 심도를 나타내는 지표에는 거래물량과 매매스프레드가 있다(예를 들면, 매매스프레드가 크면 심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점 : 일부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율이 유사한 등급 및 만기 구조를 가지는 대부분의 채권 수익율과 크게 다를 수 있다. 계리사는 그러한 이상점을 다루는 규칙을 가지고 있거나 이자율곡선 개발자의 규칙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계리사(또는 수익율곡선 개발자)는 그 채권들을 제외시키거나, 또는 제 3자가 수익율곡선 개발시 그 이상점을 포함시킨 경우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다. <p>ii) 곡선맞춤, 보간법 및 외간법 – 계리사가 채권 자료를 활용하여 이자율곡선을 만들 때에는, 적절한 곡선맞춤, 보간법 또는 외간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계리사는 적절한 채권시장 자료가 신뢰할 수 없거나 존재하지 않은 경우 보간법 또는 외간법을 사용하여 듀레이션별 수익율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한 기법의 적용에는 (적절한 스프레드의 조정과 함께) 국채, 낮은 등급의 회사채 또는 스왑 시장의 수익율과 같은 다른 시장 자료들을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최장기인</p>	<p>ii) 곡선맞춤, 보간 및 보외 – 가용한 동일 통화로 표시된 채권 자료로부터 수익률 곡선을 도출할 때, 계리사가 채권 시장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듀레이션에서의 수익율 추정에는 적절한 곡선맞춤, 보간 또는 보외 기법을 적용하는데 이 때 계리사는 전문가적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러한 기법은 (적절한 스프레드 또는 다른 조정과 함께) 국공채, 낮은 등급의 회사채, 스왑 시장 또는 종업원</p>
--	--

<p>채권보다 더 긴 듀레이션에 대해서는 스폿이자율 또는 선도이자율에 기초한 외간법을 적용하거나 균일가격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다. 계리사는 최장기채권의 듀레이션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추정되는 급여 현금흐름의 경우에 외간법의 선택이 부채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듀레이션이 짧은 구간에서의 수익율곡선 모양의 작은 변화가 장기간에 걸친 외간법의 적용에 따라 그 영향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계리사가 제 3자가 준비한 수익율곡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 3자가 그 수익율곡선을 어떻게 결정하였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p>	<p>급여와 동일 통화에서 최장 듀레이션보다 긴 듀레이션에서 수익률이 존재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국공채나 회사채 수익률과 같은 다른 시장 자료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 때 계리사는 전문가적 판단을 적용하여 이 목적에 적절한지 고려한다.</p> <p>계리사는 이 접근법을 사용하여 결정된 수익률 곡선에 기반한 단일 가중 평균 할인율을 보고기업의 K-IFRS 재무제표 공시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p>
---	--

2014.07.22 시행 기준	현재 기준
	<p>b. 수익률 곡선에 기반한 단일 가중 평균 할인율 - 계리사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 단일 가중 평균 할인율 가정을 권고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측정일까지 제공된 종업원 근무용역에 배분된 급여의 측정일로부터의 현금 흐름을 추정 ii) 문단 2.6.3 b i)에서 추정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적절한 수익률 곡선을 적용 (문단 2.6.3 a 에 기술된 바와 같이) iii) 문단 2.6.3 b ii)에서 결정된 현재 가치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값을 산출하는 단일 가중 평균 할인율을 계산

	<p>c. 채권 모형에 기반한 단일 가중 평균 할인율 – 계리사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 단일 가중 평균 할인율 가정을 권고할 수 있다.</p> <p>i) 측정일까지 제공된 종업원 근무용역에 배분된 급여의 측정일로부터의 현금 흐름을 추정</p> <p>ii) 문단 2.6.3 c i)에서 추정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현금 흐름을 생성하는 채권 포트폴리오 – 문단 2.6.3 a i)에 기술된 채권 유니버스에서 적절하게 선택된 – 를 식별하기 위해 채권 모형을 적용. 계리사가 채권 시장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듀레이션에서는 문단 2.6.3 a ii) 에 기술된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p> <p>iii) 포트폴리오 상의 채권에 대한 단일 가중 평균 수익률을 계산</p> <p>현금흐름을 측정하는 K-IFRS 제 1019 호의 할인율 선택의 목적에 적절하다고 판단한 (또는 적절하게 조정된) 제 3 자의 채권 모형을 적용할 경우, 계리사는 K-ISAP-01(계리업무 일반기준) 문단2.3 타인 의존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p>
--	--

2014.07.22 시행 기준	현재 기준
<p>c. 간편법 – 계리사는 할인율을 제시하기 위해 상기 a.에서 기술한 일반적인 방식을 따르는 대신 간편법을 사용할 수 있다.</p> <p>i) 계리사는 간편법 적용의 기초가 되는</p>	<p>d. 대체 접근법 – 계리사는 위에 기술된 내용에 대해 대체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할 경우 계리사는 이 접근법이 기반한 자료와 가정,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이해해야 한다. 대체 접근법은</p>

<p>자료와 가정, 그리고 간편법이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간편법의 적용에는 추정되는 급여 현금흐름의 듀레이션과 그 모양 (즉, 현금흐름의 모양이 부드러운지 또는 울퉁불퉁한지의 여부)이 모두 감안되어야 한다.</p> <p>ii) 계리사는 계리사의 전문가적인 판단으로 상기 a.의 iv)에 따라 결정되는 가중평균할인율에 근접하는 단일 할인율을 제시할 수 있다.</p> <p>iii) 계리사는 필요에 따라 시장지수 또는 다른 기준이자율을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계리사는 그 시장지수 또는 기준이자율의 산출에 사용되는 채권 자료와 방법론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추정된 급여 현금흐름의 듀레이션과 모양에 맞추어 적절하게 수정하여야 한다.</p>	<p>측정일까지 제공된 종업원 근무용역에 배분된 추정 급여 현금흐름의 듀레이션 및 현금흐름의 형태(즉, 굴곡이 심한지 여부)가 둘 다 고려되어야 한다. 중요성(문단 2.2)과 비례(문단 2.3)이 적용되며, 대체 접근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p> <p>i) 계리사는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위의 접근법 중의 하나에 따른 가중 평균 할인율과 근사치인 단일 할인율을 권고할 수 있다.</p> <p>ii) 계리사는 시장지수 또는 다른 참조율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계리사는 시장지수 또는 참조율 산출에 사용되는 채권 자료와 방법론에 대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K-IFRS 제 1019 호의 할인율 선택의 목적에 적절하다고 (또는 적절하게 조정되었다고) 판단하기 위해 충분한 이해를 해야 한다. 시장지수 또는 다른 참조율을 적용할 경우, 계리사는 <i>K-ISAP-01(계리업무 일반기준) 문단 2.3 타인 의존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i></p>
---	--

2014.07.22 시행 기준	현재 기준
<p>2.6.4 물가상승을 – 계리사가 대표고객에게 인플레이션 가정의 선택에 관한 조언을 제공할 때, 계리사는 평가일 현재의 시장 기대치에 대한 정보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 정보에는 물가지수의 변동, 내재적 물가 디플레이터, 명목채권 및 물가연동채권의 수익율(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효과를 감안), 물가상승율 전망, 관련 지역요인,</p>	<p>2.6.4 일반물가상승을 가정 – 계리사가 대표고객에게 인플레이션 가정의 선택 또는 합리성에 관한 조언을 제공할 때, 계리사는 측정일 현재의 시장 기대 및 다른 정보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 정보의 예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지수의 변동, - 잠재 물가 디플레이터, - 일반 채권 및 물가지수 연계채권의 수익율(중요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p>그리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포함된다.</p>	<p>효과가 고려된), - 물가상승 전망, - 관련 지역 요인,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 기타 관련 경제 자료, - 전문가의 분석 이 포함된다.</p>
------------------------------	--

2014.07.22 시행 기준	현재 기준
	<p>2.6.5 의료 원가 가정 – 계리사가 대표고객에게 의료 원가 가정의 선택 또는 합리성에 관한 조언을 제공할 경우, 일반 물가상승률과는 중요할 정도로 다를 수 있는 의료 서비스 원가의 미래 변동에 대한 추정을 고려해야 한다. 계리서비스의 중요성과 비례에 따라, 주요 원가 요소 (병원 서비스, 약, 의료기기, 기타 의료 서비스, 행정 비용)에 대해 별도 가정을 고려해야 하며, 미래 기간별로도 다른 가정을 고려해야 한다.</p>

2014.07.22 시행 기준	현재 기준
<p>2.6.5 종업원 급여수준의 변경 – 종업원급여의 성격에 따라, 장래의 급여수준에 물가상승을 이외의 요소를 반영할 수 있다. 계리사가 대표고객에게 미래의 급여수준 가정의 선택에 관한 조언을 제공할 때에는, 승진 등으로 인한 임금인상, 실제 자산 또는 명목 자산의 투자수익율, 기술적 진보, 급여 활용 또는 지급 방법의 변경, 사회보장급여의 변경, 다른 기관이 제공하는 급여 상쇄의 변화, 법정</p>	<p>2.6.6 미래 급여 금액 관련 기타 가정 – 어떤 유형의 종업원급여에는 제도의 미래 급여 금액에 일반물가상승을 및 미래의료원가 이외의 요소를 반영할 수 있다. 계리사가 대표고객에게 미래 급여 금액 가정의 선택 또는 합리성에 관한 조언을 제공할 경우,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제도의 미래 급여 금액에 중요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관련 요소를 식별해야 한다. 그런 관련 요소의 예로는 종업원급여제도의 유형에 따라</p>

<p>급여의 예상 변화, 제도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변화 등의 관련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진 등으로 인한 임금인상, - 실제 또는 명목 자산의 투자수익율, - 급여 사용률 또는 사용 패턴의 변경, - 사회보장급여의 변경, - 타자가 제공하는 급여 보전의 변경, - 예정된 법정 급여의 변경, <p>이 포함될 수 있다.</p>
---	---

2014.07.22 시행 기준	현재 기준
<p>2.6.5 다른 목적을 위한 가정—계리사가 대표고객에게 가정의 선택에 관한 조언을 제공할 때, (종업원급여제도의 재정설계와 같이)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정이나 직전 평가일에 사용하였던 인구통계학적 가정이 계리사의 전문가적인 판단에 비추어 K-IFRS 제 1019 호의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그 가정들을 고려할 수 있다.</p> <p>2.6.6 지정된 가정—계리사가 대표고객이 지정한 가정을 사용하는 때에는, K-ISAP-01 문단 (2.8)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대표고객이 지정한 가정이 계리사의 전문가적인 판단에 비추어 K-IFRS 제 1019 호, 기타 관련되는 K-IFRS 조항 또는 해당 사업장의 회계정책에 중대하게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문단 (2.3)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p>	<p>삭제</p>

2014.07.22 시행 기준	현재 기준
<p>2.6.5 가정 수립 절차의 변경 – 계리사는 일반적으로 특정 사업장에 제시하는 가정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마다 일관성 있는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p>	<p>가정 수립 절차의 변경 – 계리사는 일반적으로 특정 보고기업에 권고하는 가정을 수립할 때 매년 일관성 있는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p>

<p>가정 수립 절차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리사는 그에 관해 대표고객과 논의하여야 하며, 그 변경에 관하여 어떤 정보를 계리보고서에 언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표고객으로부터 지침을 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표고객이 가정수립절차의 변경이 K-IFRS 제 1008 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리사에게 그 변경의 속성과 일반적인 영향에 관하여 계리보고서에서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가정 수립 절차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대표고객과 변경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변경 여부 및 변경할 경우 계리보고서에 변경에 관한 어떤 정보를 공시할 것인지에 대해 대표고객으로부터 지침을 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표고객이 가정수립절차의 변경이 K-IFRS 제 1008 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리사에게 변경의 성격과 일반적인 영향에 관해 계리보고서에 공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	--

2014.07.22 시행 기준	현재 기준
<p>2.6 급여제도 자산 – 급여제도 자산은 종업원급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계리서비스의 수행에 있어서 계리사가 급여제도 자산을 감안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지침들을 따라야 한다.</p> <p>2.7.1 제 3자가 제공한 자산가치 – 계리사는 (신탁관리자 또는 투자관리자와 같은) 제 3자가 준비한 자산가치 평가자료에 의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K-ISAP-01 문단 (2.3.3)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p> <p>2.7.2 적격 보험 계약 – 급여제도 자산에 적격보험계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리사는 이 보험계약들을 채무의 계산에 적절하게 반영하여야</p>	<p>2.7 제도 자산(사외적립자산) – 계리서비스에서 제도 자산을 고려할 경우, 계리사는 다음 지침을 따라야 한다.</p> <p>2.7.1 제 3자가 제시한 자산 가치 – 계리사는 제 3자(예를 들어 신탁관리자 또는 투자관리자)가 준비한 자산 가치에 의존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 K-ISAP-01(계리업무 일반기준) 문단2.3.3 타인 의존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p> <p>2.7.2 적격 보험 계약 – 계리사는 적격 보험 계약과 확정급여채무를 정산하는데 요구되는 비용에 대한 타원천의 환급을 구분해야 한다.</p>

<p>한다. 예를 들어, 계리사는 해당사업장의 종업원급여채무와 보험회사가 담보하는 채무를 적절하게 구분하여야 한다.</p> <p>2.7.3 <u>자산 연계 급여 채무</u> – 계리사는 급여수준이 급여제도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받을 때에는 종업원급여의 가치를 전문가적 판단을 적용하여 적절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급여수준이 급여제도 자산의 운용수익에 연계되어 있거나 (문단 (2.6.5)를 참조), 또는 급여수준이 잉여금의 존재여부에 의존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된다.</p>	<p>제도 자산에 적격보험계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리사는 이 보험계약들을 과소적립액 또는 초과적립액 계산에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계리사는 보고기업의 종업원급여채무와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채무를 적절하게 구분하여야 한다.</p> <p>2.7.3 <u>자산 연동 급여 채무</u> – 미래 급여 수준이 제도 자산 가치에 영향을 받는 급여(예를 들어, 급여 수준이 제도 자산의 수익에 연동되거나 (문단 2.6.6) 초과적립금 존재 여부에 종속되는 경우)에 대한 가치 평가에 대해 조언하는 경우, 계리사는 종업원 급여를 연동된 자산의 성격과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p>
--	---

2014.07.22 시행 기준	현재 기준
<p>2.7.4 <u>자산인식상한</u> – 잉여금이 존재하면, 즉 급여제도 자산의 공정가치가 급여제도의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초과하면, 계리사는 자산인식상한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자산인식상한은 그 잉여금이 급여제도로부터의 환급 또는 미래 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의 감소의 형태로 해당 사업장에게 돌아오는 경제적 이익의 현재가치를 초과하는 때에 적용된다. 자산인식상한이 적용되거나, 적용여부에 확신이 없을 경우에, 계리사는 IFRIC 14</p>	<p>2.8 <u>자산인식상한</u> – 자산인식상한은 제도로부터의 환급이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절감의 형태로 보고기업이 이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현재가치이다. K-IFRS 제 1019 호는 보고기업이 확정급여제도의 초과적립금과 자산인식상한 중 작은 값을 순확정급여자산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 해석 제 14 호 (IFRIC 14)는 자산인식상한의 결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계리사는 자산인식상한의 적용 여부와 적용 방법, 제도 규정의 법적 해석이나 최소 적립 요구사항과 같은 관련 사항에 관해 대표고객으로부터 지침을 구해야</p>

<p>(국제재무 보고해석기준 제 14 호)의 적용여부에 관해 대표고객으로부터 지침을 구해야 한다.</p>	<p>한다.</p>
--	-------------------

2014.07.22 시행 기준	현재 기준
<p>2.8 급여의 근무기간별 귀속 -계리사가 급여의 근무기간별 귀속 방법에 대하여 대표고객에게 조언을 제공할 때, 급여 공식이 현재 임금의 일정비율로 표시되는 경우에 급여를 귀속시키는 방법 등, K-IFRS 제 1019 호의 관점에서 처리 방법이 분명하지 못한 경우들을 다루기 위해 전문가적 판단을 동원해야 한다.</p>	<p>2.9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의 배분 - 근무기간에 대한 제도 급여의 배분에 대해 대표고객에게 조언을 제공할 경우, 계리사는 K-IFRS 제 1019 호에서 처리가 명확하지 않은 제도 설계를 다룰 때 전문가적 판단을 해야 한다.</p>

2014.07.22 시행 기준	현재 기준
<p>2.9 과잉조치 금지의 원칙 - 종업원급여채무의 평가에 투입되는 노력은 중요성을 감안하여 수임된 과제에 부여된 정확성의 수준에 비례하여야 한다. 계리사는 특정한 유형의 가정이나 좀더 정교한 기법을 사용하더라도 계리사의 전문가적인 판단에 비추어 보았을 때 중요하게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면 그 것들을 대표고객에게 권고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할인율의 결정에 간편법을 적용하거나, 계리적으로 동일한 다양한 생명연금 옵션을 허용하는 연금제도에서 모든 참가자들이 가장 공통적인 옵션을 선택한다고 가정해도, K-IFRS 제 1019 호 결과가 좀더 정교한 기법을 사용한 결과와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이</p>	<p>(항목 이동)</p> <p>2.3. 비례의 원칙 - K-ISAP-01(계리업무 일반기준) 문단 1.5 합리적 판단 특히 문단 1.5.2를 적용할 때, 계리사는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계리사에 의해 권고되는 특정한 가정과 기법의 정교한 수준은 계리서비스의 영향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다음과 같이 계리사의 전문가적 판단이 적용되는 예가 있다.</p> <p>a. 계리사는 가정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계리서비스에 비례적이라면 간편 접근법을 가정으로 권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제도가 주로 퇴직시 일시금 지급인 경우 사망률 가정의 선택은 부채에 대한 영향이</p>

<p>문단에서 중요성이라 함은 문단 (2.2.1)에서 언급한 계리서비스와 관련된 중요성을 의미한다.</p>	<p>거의 없을 수 있다. 두 번째 예로 특정 업무 관련 사고나 상해 급여의 추정 현금 흐름은 매우 불확실할 수 있으므로 할인을 선택시 지나치게 정교한 접근을 한다면 비례적이지 않다.</p> <p>b. 계리사는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측정일 기준의 신규 입사자 통계 자료를 수집하는 대신에 다른 날짜에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여 결과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p> <p>c. 계리사는 다른 목적으로 선택된 가정(종업원 급여 제도 적립금 결정을 위한)이나 과거에 사용된 인구통계학적 가정이 당기에도 K-IFRS 제 1019 호 목적에 합리적이라면 그대로 적용하거나 또는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d. 계리사는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근무기간에 걸친 급여 배분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다.</p>
---	--

2014.07.22 시행 기준	현재 기준
<p>3.1. 계리보고서 명시 사항 – 계리사는 K-ISAP-01 제 3 장의 지침을 준수함은 물론, 다음 사항들을 계리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p> <p>a. 문단 (2.2.1)에 기술된 계리서비스의 관점에서 이 기준에서 요구하는 지침의 중대한 위반사항 – 문단 (1.3.3)</p> <p>b. 미해결된 중대한 오류, 누락, 또는 K-IFRS 제 1019 호나 다른 관련 K-IFRS 기준 또는 해당 사업장의</p>	<p>3.1. 계리보고서 공시 사항 – 계리사는 K-ISAP-01 (계리업무 일반기준) 제 3 장 발표를 준수할 뿐 아니라 다음 사항들을 계리보고서에 공시하여야 한다.</p> <p>a. 문단 1.3의 지침에 따른 중요한 위반 사항</p> <p>b. 의제 의무와 관련하여 대표고객이 제시한 정보에 의존 – 문단 (2.4)</p> <p>c. 공시가 요구된 가정 선택 절차의</p>

<p>회계정책과의 불일치 – 문단 (2.3)</p> <p>c. 의제 의무와 관련하여 대표고객이 제공한 정보에의 의존 – 문단 (2.4)</p> <p>d. 명시되어야 하는가정수립 절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문단 (2.6.8)</p>	<p>변경에 관한 사항 – 문단 (2.6.7)</p>
--	--------------------------------------

(부록 1)

용어해설

변경없음

(부록 2)

참고사항

2014.07.22 시행 기준	현재 기준
<p>이 부록은 계리업무기준의 일부는 아니지만 K-IFRS 제 1019 호에 관련된 계리서비스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p>	<p>이 부록은 단지 정보성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계리업무기준의 일부가 아니고 따라서 효력이 없다.</p>

2.1 배경

2014.07.22 시행 기준	현재 기준
<p>K-IFRS 제 1019 호는 K-IFRS 제 1102 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주식기준보상 이외의 종업원급여에 대한 고용주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IAS19 Employee Benefits 을 개정함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도 K-IFRS 제 1019 호 ‘종업원 급여’를 2011년 11월에 개정하였다. 개정된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된다.</p> <p>K-IFRS 제 1019 호의 핵심원칙은 종업원급여를 위한 비용은 그 급여의 지급일이 아니라 종업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p>	<p>K-IFRS 제 1019 호는 K-IFRS 제 1102 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주식기준보상 이외의 종업원급여에 대한 고용주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IAS19 Employee Benefits 을 개정함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도 K-IFRS 제 1019 호 ‘종업원 급여’를 2011년 11월에 개정하였다. 개정된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된다. 이 기준의 발표 시점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IAS19 을 두 번 개정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급여제도: 종업원 기여”로 명명되고 2013년 11월에 발표된 소규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인율 : 지역 시장 이슈 ” 로 명명되고 IFRS 2012-2014 연차개선에 포함된 2014년 9월에 발표된 개정 <p>K-IFRS 제 1019 호의 핵심원칙은 종업원급여를 위한 비용은 그 급여의 지급일이 아니라 종업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p>
--	---

2.2 종업원급여제도의 분류

변경없음

2.3 분류별 회계처리

2014.07.22 시행 기준	현재 기준
<p>2.3 범주에 따른 회계처리 (중략)</p> <p>확정급여형 퇴직급여 및 기타 장기종업원급여 :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및 기타 장기종업원 급여는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걸쳐 귀속시킨다. 사용자는 측정일 현재의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급여제도 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대차대조표의 부채(자산)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순부채(자산)을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이라고 한다. 사용자의 대차대조표에 인식되는 순자산은 자산인식상한의 적용을 받으며, 그 자산인식 상한은 급여제도로부터의 환급 또는 장래 기여금의 감소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로서 정의된다.</p>	<p>2.3 분류별 회계처리 (중략)</p> <p>확정급여형 퇴직급여 및 기타 장기종업원급여 :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및 기타 장기종업원 급여는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걸쳐 귀속시킨다. 사용자는 측정일 현재의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급여제도 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재무상태표의 부채(자산)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순부채(자산)을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이라고 한다. 사용자의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순자산은 자산인식상한의 적용을 받으며, 그 자산인식 상한은 제도로부터의 환급 또는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 절감의 형태로 사용자가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로서 정의된다.</p>

(중략)	(중략)
<p>K-IFRS 제 1019 호에는 장기장애급여 또는 산업재해급여에 관한 특별한 조항이 있다. 종업원의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급여수준이 동일한 경우에, 그 급여의 예상비용은 장기재해 또는 산업재해의 발생을 초래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 인식된다.</p>	<p>K-IFRS 제 1019 호에는 특정 장기장애급여 또는 업무관련상해급여에 관한 특별한 조항이 있다. 종업원의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급여수준이 동일한 경우에, 그 급여의 예상비용은 장기장애 또는 업무관련상해의 발생을 초래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 인식된다.</p>

2.4 K-IFRS 보고서 공시

2014.07.22 시행 기준	현재 기준
<p>K-IFRS 제 1019 호는 보고기업이 K-IFRS 보고서에 다음 정보들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급여제도의 특성과 관련 위험에 대한 설명 ● 확정급여제도에 의하여 K-IFRS 보고서에 나타나는 금액에 대한 확인 및 설명 ● 확정급여제도가 보고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 <p>K-IFRS 제 1019 호에 관련된 계리 업무에는 흔히 보고기업이 이러한 공시의무를 완수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된다. 계리사가 실무적으로 특별히 가치 있는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신청구제한이 없는 퇴직후 의료급여, 사용자에게의 잉여금 환급을 제한하는 급여제도, 단일 종목에 투자된 급여제도 자산의 집중, 보험보상과 관련된 거래상대방 리스크 등 보고기업 또는 	<p>K-IFRS 제 1019 호는 보고기업이 K-IFRS 재무제표에 다음 정보들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급여제도의 특성과 이와 관련된 위험을 설명하는 정보 ● 확정급여제도에서 발생하는 재무제표상 금액을 식별하고 설명하는 정보 ● 확정급여제도가 어떻게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기술하는 정보 <p>K-IFRS 제 1019 호에 관련된 계리 서비스에는 흔히 보고기업이 이러한 공시의무를 완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포함된다. 계리사가 실무적으로 특별히 가치 있는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신청구제한이 없는 퇴직후 의료급여, 기업에게 초과 적립금 환급을 제한하는 급여제도, 단일 유형에 투자된 제도 자산의 집중, 예상 보험 보상과 관련된 거래상대방 리스크 등 특이하거나 기업

<p>급여제도 특유의 비일상적인 제도의 특성 및 리스크에 관한 공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사위험관리(ERM), 자산부채매칭(ALM), 장수 스왑등과 같은 리스크관리전략에 관한 공시 ● K-IFRS 보고서상 금액의 연초에서 연말까지의 변동내역의 확인을 포함한 상세한 설명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급여제도가 보고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예상 기금납부액)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공시 	<p>또는 제도에 특유한 비일상적인 위험과 제도 특성에 관한 공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사적 위험관리(ERM),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장수 스왑 등과 같은 리스크관리 전략에 관한 공시 ● K-IFRS 재무제표상 금액의 연초에서 연말까지의 조정된 내역을 포함한 K-IFRS 재무제표상 금액에 대한 설명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급여제도가 보고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예상 기여금 등)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공시
--	--